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종합감사 -

2024. 하반기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	이사회 운영 부적정	(시정)		2
2.	호봉 확정 부적정	(시정)		4
3.	취업규칙 등 규정 관리 미흡	(통보·시정)		8
4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1
5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시정)		14
6	자동차세 연납 미실시	(주의)		17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이사회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경북자원봉사센터’라 한다)에서는 경북자원봉사센터의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선임직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4항 및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 제5항, 제6항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법인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49조, 제52조, 제97조에 따르면 법인 설립 시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때 이사의 성명 및 주소를登記 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登記 해태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이사에 대해서는 비등기이사¹⁾로 선임된

1) 비등기이사란 말 그대로 '등기되지 않은 이사'를 의미하며, 대외적인 활동의 편의성이나 등기로 인한 행정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실무상 활용되는 이사의 선임방식으로 이러한 비등기이사란 '말만 이사일 뿐, 법적으로는 이사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비등기이사를 둘 수 있으나, 다만 법적으로는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의결정족수 등을 판단할 때 산입되지 않음(법인형 자원봉사센터 운영가이드,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경우가 아니라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설립등기 시 이사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고 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 의무를 이행하여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북자원봉사센터 ☆☆☆☆☆에서는 2022년 제9기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전체 이사 15명 중 3명 만을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였고, 2024년 제 10기 이사회 구성시에도 전체 이사 13명 중 자원봉사단체 대표는 경북자원봉사 센터장을 유일하게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의결권이 있는 이사로서 법인 등기 대상의 이사에 대한 등기와 관련하여, 2003.12.1. 법인설립 시 설립등기 당시부터 의결권이 있는 이사에 대하여 등기 의무를 완전히 완료한 사실이 없고 당연직 및 일부 이사에 대해서만 등기하여 왔으며, 2024.11.14. 감사일 현재에도 이사 13명 중 당연직 3명에 대해서만 등기 되어 있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등기가 누락된 법인 이사에 대하여서는 등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호봉 확정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경북자원봉사센터’라 한다)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승급기간 산입 사유 발생 시 호봉을 재확정하고, 신규 임용 시에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하고 있다.

1. 호봉 재확정 부적정

「사단법인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보수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르면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 부터 7년이 지난 경우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정직”으로 인하여 적용받고 있던 승급제한기간 18개월을 승급기간에 합산하여 재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직” 징계처분 대상자가 정직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 승급기간 산입 특례 적용시점이 도래하면 규정 상 적시에 대상자의 호봉을 재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소속 직원 ★★의 호봉 재확정을 처리하면서 ○○ 처분 집행이 끝난 20XX.X.X. 이후 7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인 20YY.YY.01.기준으로 ★★★의 호봉 재확정을 처리하지 않고 9개월이 지난 2021.7.1. 호봉 재확정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지급된 급여 000,00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초임 호봉 확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경력 증명 및 전력조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호봉 확정 시행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확정 전에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초임호봉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대상기관에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근무시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유사경력에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호봉을 확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야 하고, 심의회에서는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률,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확한 사항 또는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단법인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인사규정」 제12조 및 「사단법인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보수규정」 제5조에 따르면 신규임용 시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경력환산표

분 야		채용 시 경력 인정 비율	호봉 산정 시 경력 인정 비율
자원봉사센터		100%	100%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자원봉사·사회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력	100%	100%
	자원봉사·사회복지 이외 업무 수행경력	80%	80%

※ 경북자원봉사센터 보수규정 [별표2]

따라서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신규 임용한 직원에게 초임호봉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직원의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확한 사항 또는 단순·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호봉을 확정하기 전에 자체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받은 후 호봉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XX년 신규직원 임용 시 초임 호봉 획정을 하면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대상기관에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신규 직원이 응시자로서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호봉 산정 시 경력을 인정하였다.

또한 신규 직원 “●●●”의 “○○○○○○○○○○” 경력의 경우 채용 응시 당시 제출한 경력 증명서상에 “◇◇◇◇◇◇ ◇◇◇◇◇◇사업 자원봉사센터 연계사업”이라고 기재된 내용으로 자원봉사·사회복지관련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호봉을 확정하기 전 자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의 구성 및 심의 없이 센터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신규채용자에 대한 전력조회 후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 통 보

제 목 취업규칙(인사·복무 규정) 등 규정관리 미흡
소 관 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경북자원봉사센터’라 한다)에서는 「사단법인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사단법인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직원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고 각각 인사에 관한 사항,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취업규칙의 제정·운영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²⁾을 규정한 취업규칙³⁾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2024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자원봉사센터 기준으로 수정한 문서를

-
- 2)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3) 취업규칙이란 다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집단적·통일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함(대법원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등)

[별첨1] 인사·복무표준규칙으로 첨부하며 자원봉사센터는 해당 지침 [별첨1] 인사·복무 표준규칙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운영지침”의 “인사·복무표준규칙”을 참조하여 인사·복무규정을 작성하여 취업규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작성한 인사·복무규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북자원봉사센터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난임치료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복무 규정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

2. 징계의 효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2024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인사·복무관리”에 따르면 직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기간제법, 지방공무원 복무·보수규정 등)을 최우선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첨1] 인사·복무 표준규칙(2022)의 표준근로규칙(안) 제62조에서 “정직”은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1조에서는 징계의 효력으로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자원봉사센터는 인사 및 복무 규정의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표준근로규칙(안)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상반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북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제30조에서는 “강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기간 중 보수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도 보수의 5할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등”과 “정직”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단법인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별표3]의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감액지급표”에 따르면 정직기간 중 수당액의 2/3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누락된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 반영, 징계 효력 등 관련 법령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사·복무 규정을 개정하시고,**(통보)**
- ② 기관의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경북자원봉사센터’라 한다.)는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등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편성목 및 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명절선물 등 지출 부적정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화환·화분을 전달하고 있으며 설, 추석 명절 시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회계관리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는 화환·화분은 [별표1] 7호 나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와 [별표1] 7호 다목에 따라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의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 시 제공이 가능하고, 연말, 설, 추석 시 의례적인 선물은 [별표1] 6호 아목에 따라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화환·화분 및 명절선물 집행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집행가능 대상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경북자원봉사센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비상근 이사회 임원 및 도의원, 유관기관장을 대상으로 설, 추석에 00건, 0,000천원의 상당의 명절선물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제공하였고, 유관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협의 명목으로 00천원 상당의 화분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제공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상품권의 관리대장 미작성

「회계관리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상품권 배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령자에게 배부하면서 수령확인을 위한 자필 서명 등을 받은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경북자원봉사센터 ☆☆☆☆☆에서는 소속직원 격려목적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총 00매 000천원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수령확인을 위한 자필서명 등을 받은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하였다.

3. 방문객 홍보물품 예산편성 및 지출 부적정

「회계관리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의하면
4. 업무추진비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규정하면서, [별표1]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항목으로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방문객 홍보물품 및 행사관련 기념품을 예산편성 및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비목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북자원봉사센터 ☆☆☆☆☆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할 내방객 홍보물품 및 행사관련 기념품 0건, 000천원 가량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에 없는 항목인 소모품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자원봉사센터는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등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운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회계관리 훈령」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1.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회계관리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는 기관의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고, 공동구매 제도를 통해 유류를 구매할 경우 2.88%의 현장할인과 1.1%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포인트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연 1회 해당계좌로 포인트가 자동 환급조치 되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 공용차량에 대한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북자원봉사센터 ☆☆☆☆☆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신청·발급하지 않았고, 2021.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용차량에 대한 유류를 구매하면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법인카드로만 00,000천원 가량을 구매함으로써 000천원 상당의 할인 받을 기회를 일실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였다.

2. 신용카드 관리 미흡

「회계관리 훈령」[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기관은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30장에 대해 발급일자, 금융기관, 보관책임자를 알 수 있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해당 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북자원봉사센터 ☆☆☆☆☆에서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연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지 않거나(2021년, 2023년), 일부 포인트만 세입조치(2022년)하여 감사일 현재 000,000P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로 000P가 소멸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류 구매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시고,
사용중인 카드에 대해 카드발급대장 작성·비치 및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000,000포인트는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자동차세 연납 미 실시
소 관 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자원봉사센터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안동시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에 의하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회계관리 훈령」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관리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회계관리 훈령」 제6조제1항에서 기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고 지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연 1회 납부대상인 ◆◆◆◆◆◆◆◆ 등 4대를 제외하고 연 2회 납부대상인 ■■■■(00□0000) 차량에 대해서 연납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경북자원봉사센터 ☆☆☆☆☆에서는 ■■■■(00□0000)차량에 대해 2021~2024

년도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000,000원을 절감할 수 있었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